

#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9. 26.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9.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9. 13.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2. 9. 2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마포중앙도서관장

### 가. 제안이유

지역사회에 고품질 정보문화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도서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 민간위탁 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복사골 작은도서관 : 2022. 11. 1. ~ 2025. 10. 31.(3년)

(나)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및 관리
- 도서 열람·대출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서관 물품 및 시설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라) 위탁시설 개요

도서관명	소재지	면적(m <sup>2</sup> )	인력(명)	위탁운영법인
서강도서관	독막로 165, 3~5층	1146	9	(사)한국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마포대로7길 18, 2층	107	1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방울내로7길 11, 1층	181	1	
성메작은도서관	월드컵북로30길 22, 2층	129	1	
해오름작은도서관	신촌로26길 10, 2층	168	1	
성산클마루작은도서관	월드컵북로 235, 3층	188	1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백범로 227, 3층	174	1	(사)마포문화원
용강동작은도서관	토정로31길 31, 2층	190	1	(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복사골작은도서관	도화4길 53, 3~4층	350	1	(주)서강교육그룹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2022년 예산기준)

- 소요예산

\* 서강도서관 위탁운영비 교부금액 : 700,531천원

\* 작은도서관(8개관) 위탁운영비 교부금액 : 538,481천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도서관명	합 계	구 분		
		인 건 비	운 영 비	도서구입비
구립서강도서관	700,531	526,750	146,981	26,800
작은도서관(8개관)	538,481	319,461	172,620	46,400
합 계	1,239,012	846,211	319,601	73,200

3. 검토보고 (김동원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마포구립 서강 및 작은도서관(8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서강도서관과 작은도서관 8개소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은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도서관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 서강도서관과 작은도서관 8개소에 대한 운영사무에 대한 재계약진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운영관리 규정, 『동 조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 성과결과를 반영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2. 관련 분야의 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 능력

**제23조(위탁협약)**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위탁협약 만료 전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 서강 및 작은도서관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 안 건 : 2022년 서강 및 작은도서관 운영 성과평가
- 일 시 : 2022. 6. 16.(목) 14:00
- 장 소 : 마포중앙도서관 문화강연방 2
- 심사위원 : 3명 중 3 명 참석
- 심의결과

관종	도서관명	심사위원			총 점	평균점 <small>(소수 둘째자리 반올림)</small>
		송경진	정재희	황성원		
공공	서강도서관	87.2	80.3	86.4	253.9	84.6
작은	꿈을이루는	70	70	70	210	70
	아름드리	78	76	76	230	76.7
	성 메	76	74	76	226	75.3
	해오름	72	72	70	214	71.3
	성산글마루	77	78	78	233	77.7
	초록숲	82	82	82	246	82
	늘푸른소나무	70	70	70	210	70
	용강동	70	70	74	214	71.3
	복사골	70	70	71	211	70.3

2022. 6. 16.

위원장 : 송경진 [서명]  
 위 원 : 정재희 [서명]  
 위 원 : 황성원 [서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